

특정감사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3년 시설물 관리 특정감사 —

2023. 11.



# 1. 행정상 일람표

(단위 : 천 원)

번호	소관	건명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시정	주의	회수	금액	감액	금액	추징
계		4건	4	0					
1	□□□□□	##&&& @@@@ ※※※ 및 □□□□ 확장공사 추진 부적정	1						
2	□□□□□	○○○도로 확장공사 사후관리 부적정	1						
3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1						
4	○○○○○	◆◆ △△마을 조성사업 추진 및 관리 부적정	1						

# 2. 처분요구일람표

- 1. ##&&& @@@@ ※※※ 및 □□□□ 확장공사 추진 부적정 (시정) · 1
- 2. ○○○도로 확장공사 사후관리 부적정(시정) ..... 4
- 3.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후관리 부적정(시정) ..... 7
- 4. ◆◆ △△마을 조성사업 추진 및 관리 부적정 (시정) ..... 10

일련번호	1	감사자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처리부서)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 # &&& @@@@ ※※※ 및 □□□□ 확장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  
관 계 부 서        □□□□□  
내 용

☞☞☞ □□□□□에서는 “# # &&& @@@@ ※※※ 및 □□□□ 확장공사”를 아래 [표]와 같이 2020. 5. 25. ▼▼건설(주) 000와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시설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공사명	위 치		사업량	공사비			사업기간	도급자
	읍면	리동		계	도급	관급		
# # &&& @@@@ ※※※ 및 □□□□ 확장공사	§§	☆☆	보행인도교 L=124m	2,434	1,923	511	2020. 5. 27. ~ 2021. 6. 18.	▼▼건설(주) 000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감독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에 따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06호, 2020. 3. 31.)」 제4조 및 제138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및 그 밖에 관계 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 공사와 영구 시설물 공사의 작업 단계별 시공 상태의 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 □□□□□에서는 “# # &&& @@@@ ※※※ 및 □□□□ 확장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 목적물이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였어야 하나 소홀히 하였고, 정기 하자 검사를 3회<sup>1)</sup> 실시하는 동안 하자 현황을 발견치 못하였으나, 감사일 현재(2023. 10. 11.) 현지 확인 결과 보행인도교 교량의 교대(A2) 받침을 부적정<sup>2)</sup>하게 설치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 결과 상기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과 부적정하게 설치됨으로써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교량 받침이 파손(2개소)되었고 그에 따른 재시공 비용 약 00백만 원(제경비 포함)이 발생 되어, 보행인도교 이용자들의 통행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1) 정기하자 검사 일자 : 2022. 3. 3., 2022. 8. 8., 2023. 3. 13.

2) 교대(A2)의 ①, ②번 받침은 상부거더의 온도신축 등에 적응하도록 설계되었으며, ②번 받침의 설치 방향은 설계 도면에 직각 방향의 19.7°로 설치되어야 하나, 약 110°로 부적정하게 설치

[사진] 교량 받침(A2) 부적정 설치 현황 (생략)

조치할 사항 ☞☞☞☞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하자 보수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2	감사자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처리부서)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도로 확포장공사 사후관리 부적정  
소 관 청        ☘☘☘  
관 계 부 서     □□□□□  
내 용

☘☘☘ □□□□□에서는 “○○○도로 확포장공사”를 ♥♥건설(주)과 2021. 6. 23. 계약하고 2021. 12. 24. 준공하는 등 아래 [표 1]과 같이 추진하였고 현재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 1] 시설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사업내용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대표자)	비고
			계	도급	관급		
○○○도로 확포장공사	도로확포장 L=368m	2021. 6. 23. ~ 2021. 12. 24.	709	442	220	♥♥건설(주) 00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제9장 제11절에 따르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 2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 이행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11절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고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하자발생 내용 및 처리사항을 기록·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부서에서는 2021. 12. 24. 준공된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표 2]와 같이 하자검사를 실시하면서 ‘이상 없음’으로 하자검사 결과를 제출하였다.

#### [표 2] 시설공사 하자검사 현황 (생략)

그러나 2023. 10. 10.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 결과 [표 3]과 같이 도로측구 구조물의 재료분리 등이 확인되었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노면수 처리 불량 및 구조물 내구성 저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하자검사·보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표 3] ○○○도로 확포장공사 하자발생 현황 (생략)

**조치할 사항 ☞☞☞☞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하자 보수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3	감사자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처리부서)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소 관 청 ☸☸☸  
 관 계 부 서 □□□□□  
 내 용

☸☸☸ □□□□□에서는 [표 1]과 같이 2020. 6. 23. ◆◆건설(주)와 계약하고 2021. 12. 23. 준공된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 1] 시설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위 치	사업량	공사금액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계	도급액	관급액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면 ## 143번지 일원	교량 재가설 1개소 도로정비 L=716.0m	4,071	2,865	1,206	2020. 6. 29. ~ 2021. 12. 23.	◆◆건설(주) 00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계약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11절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자검사에 참관하여야 하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11절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고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하자발생 내용 및 처리사항을 기록·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시설공사 등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가 발생된 경우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하자의 발생원인과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하자보수를 시행한 후 하자발생 내용 및 처리사항을 기록한 하자보수 관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런데 ☁☁☁ □□□□□에서는 2021. 12. 23. 준공된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표 2]와 같이 ■■■로부터 하자검사 실시공문을 통보받고도 2022년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표 2] 하자검사 업무 현황 (생략)**

또한 감사기간 중(2023. 10. 5.) 현장 확인 결과 도로 비탈면 녹화공법인 식생매트의 씨앗이 비탈면 전역에 골고루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되어있는 등 [표 3] 및 [사진]과 같이 하자가 발생한 상태이나, 〰〰〰 □□□□□에서는 2회의 하자검사결과 ‘이상없음’으로 ■■■에 통보하고 현재까지 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하자검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표 3] 하자 현황**

공 종	사 업 량	사 업 비	복 구 비	비 고
비탈면 녹화공 (식생매트)	0,000㎡	00백만 원	00백만 원	

**[사진] 도로 비탈면 현장 사진 (생략)**

**조치할 사항 〰〰〰〰는**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하자 보수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4	감사자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처리부서)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 △△마을 조성사업 추진 및 관리 부적정

소 관 청 ☸☸☸

관 계 부 서 ○○○○○

내 용

### 1. 시설물 하자관리 부적정

☸☸☸ ○○○○○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 △△마을 조성사업”을 (주)●●과 2021. 10. 22. 계약하고 2022. 7. 31. 준공하였으며, 현재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 1] 시설공사 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공사기간	사업비(백만 원)			도급자	비고
			계	도급액	관급액		
◆◆ △△마을 조성사업	상가동 신축 327㎡	2021. 10. 29. ~ 2022. 7. 31.	1,010	930	80	(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계약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11절에 따르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하자검사에 입회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 이행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11절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고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하자발생 내용 및 처리사항을 기록·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시설공사 등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하자의 발생원인과 조치계획을 제출받고 하자보수를 시행한 후 하자발생 내용 및 처리사항을 기록한 하자보수 관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런데도 ☁☁☁ ○○○○○에서는 2022. 7. 31. 준공된 “◆◆ △△마을 조성사업”을 관리하면서 ■■■로부터 2022년도 하반기 하자검사 실시 및 결과 제출 공문 ‘■■■-3263(2023. 2. 26.)호’, 2023년도 상반기 하자검사 실시 및 결과 제출 공문 ‘■■■-17440(2023. 10. 4.)호’를 접수하여 하자검사를 위임받았음에도 준공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아래 [표 2]와 같이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아래 [사진]과 같이 누수, 곰팡이, 마감불량 및 철골부재 부식 등이 확인되었으나 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는 등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2023. 10. 12. 감사일 현재까지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하자보수 관리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하자보수를 부적절하게 시행한 사실이 있다.

## [표 2] 하자 검사 현황 (생략)

### [사진] ◆◆ △△마을 조성사업 하자 현황 (생략)

## 2. 건축공사 시설비 사용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급 관리계획에 따라 물품을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취득한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정수 관리 대상 물품<sup>3)</sup>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에서는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을 진행하면서 건축공사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 물품의 정수를 정한 물품

하여야 하고, 정수 관리 대상 물품은 수급 관리계획에 따라 정수를 배정받아 구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건축공사 사업비는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의 용도로만 경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 ○○○○○에서는 “◆◆ △△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2022. 7. 22. 아래 [표 3]과 같이 정수설비 및 테이블 수량변경 등 00,000천 원을 증액하는 설계변경을 시행하면서 테이블 및 의자 등 5개 공종은 정수 관리 대상 물품으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님에도 아래 [표 4]와 같이 정수설비 변경 등의 내역서에 포함하여 설계변경 하였고, 정수 관리 대상 물품은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 관리계획을 세워 정수를 배정받아 구매하여야 하나 구매 전 수급 관리계획 수립 없이 건축공사 시설비로 편성된 예산 약 00,000천 원을 목적 외 용도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 3] 공공건축건립사업 설계변경 내역 (생략)

[표 4] 시설비 목적 외 사용 설계변경 내역서 (생략)

### 3. 건축공사 준공 후 공유재산 관리업무 부적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 ○○○○○에서는 “◆◆ △△마을 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 60일 이내에 등기·등록하거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 ○○○○○에서는 2022. 7. 31. “◆◆ △△마을 조성사업”을 준공 후 공유재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에 해당하는 2022. 9. 30. 까지 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기간을 초과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법령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조치할 사항 ☞☞☞☞는

- ① 앞으로 사후관리 업무 추진 시 관계 법령 규정 확인을 철저히 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연찬과 함께 엄중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하자 보수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시정)